부 산 가 정 법 원

심 판

사 건 2017느단200428 상속재산의 분여

청 구 인 갑(1957년생, 남)

주소 부산

소송대리인 변호사

사건본인 망을

최후 주소 부산

등록기준지 부산

주 문

사건본인의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분여한다.

이 유

기록에 의하면, 청구인은 사건본인(피상속인, 이하 '사건본인'이라고만 한다)과 상당한 기간 생계를 같이 하고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간호하는 등 사건본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임이 인정된다.

나아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, 보호·요양간호의 정도,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, 특별연고를 주장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, 사건 본인의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분여함이 상당하다.

따라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.

2017. 9. 28.

판사 이 미 정

별지 상속재산 목록 생략